

-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-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999
--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0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7년 9월 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,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### (1)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- 관련법령 : (공동)지방공기업법 제49조
  -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(2)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
-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
-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
-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
-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
-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
- 친환경 LED조명 교체
- 테마역사 조성
-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

### (3) 출자의 필요성

-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
-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나,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하여 '18년 서울시 지하철 분야에 대한 출자 예산 편성 전에 출자 동의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운영 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내진보강, 노후전동차 교체, 승강편의시설 설치, 승강장안전문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음
- 서울시가 검토 중인 '18년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'17년 대비 55.1%(2,585억 84백만원) 증가한 7,282억 40백만원으로 '18년 출자금액이 급증한 주된 사유는 '18년 도시철도공채 부채 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'17년에 비해 2,776억 29백만원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

- 참고로 '18년 서울시 출차계획을 살펴보면 '17년 대비 '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' 등 국비·시비·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39.2%(474억 68백만원) 감소한 736억 65백만원, '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' 등 시비·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70.7%(175억 94백만원) 증가한 424억 84백만원, '공사전출금' 등 전액 시비 사업은 89.1%(2,884억 58백만원) 증가한 6,120억 91백만원을 출차하는 것임<sup>1)</sup>

※ 참고 :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차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	2018년 (편성검토안)	증 감	비 고
<b>합 계</b>	<b>469,655,250</b>	<b>728,239,562</b>	<b>258,584,312</b>	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46,500,000	52,500,000	6,000,000	국비:시비:운영기관 =40%:30%:30%
지하철 1~4호선 내진보강	16,500,000	9,990,000	△6,510,000	
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	24,540,000	-	△24,540,000	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27,015,000	11,175,000	△15,840,000	국비:시비:운영기관 =30%:35%:35%
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	6,578,000	-	△6,578,000	
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	3,585,000	11,680,000	8,095,000	시비:운영기관 =50%:50%
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	291,000	291,000	-	
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	1,853,000	4,827,000	2,974,000	
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	5,360,250	2,985,600	△2,374,650	
지하철 2·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	12,500,000	21,400,000	8,900,000	시비:운영기관 =13%:87%
지하철역 화장실 확충	1,300,000	1,300,000	-	시비 역량 1억원씩 출차
공사전출금	319,433,000	597,061,962	277,628,962	시비 100% 출차
선도 테마역사 조성	2,500,000	2,000,000	△500,000	
지하철역 캐노피 설치	1,600,000	3,100,000	1,500,000	
지하철 소음측정 사업	100,000	-	△100,000	
지하철역 노후 승강편의시설 개선	-	9,929,000	9,929,000	

1) 동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출차·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차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

- 서울지하철의 경우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에도<sup>2)</sup> 못 미치는 운임 수준과<sup>3)</sup>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로<sup>4)</sup> 운영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

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, 내진보강, 노후전동차 교체 등의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출자를 통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할 것임

- 다만,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업체 시험성적서 허위 제출, 김포공항역 등 9개 역사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사업 지연,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관련 감사원 문책요구 등 서울교통공사 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,

서울시는 출자 이후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·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

---

2) 2017년 5월말 기준 서울지하철 1~8호선 일인당 수송원가 1,344원

※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3) 평균운임 944원

※평균운임 = 운수수입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※교통카드 이용 기준 기본운임 1,250원(10km이내), 10이상~50km미만 구간은 매5km마다 100원 추가, 50km이상 구간은 매8km마다 100원 추가

4) 2016년 서울지하철 1~8호선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액은 3,457억원이며, 이는 2016년 당기 손손실 3,850억원의 89.8%를 차지하는 규모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9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,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- 관련법령 : (공통)지방공기업법 제49조
  -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나.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
-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
-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



-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
- 지하철 관세센터 통합구축
-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
- 친환경 LED조명 교체
- 테마역사 조성
-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

#### 다. 출자의 필요성

-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
-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나,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#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소순선 (☎2133-2248)